경기지방고용노동청(공시송달)공고 제2026-253호

#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·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·취업지원 종료 사전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11. 11.

##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

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인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·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, 제12조 및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| 연번 | 성명 | 생년월일 | 주소 | 송달 서류의 명칭 | 송달의 주요 내용 | 송달불능 사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임○대 | 020704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(조원동) (이하 생략) |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(중단) 사전통지 의견제출 안내 | 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중단)<br>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| 연락두절<br>폐문부재 |

4. 공고기간: 2026. 11. 11. ~ 2026. 11. 25.(15일간)
5. 기타 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수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조덕희(Tel. 031-231-480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